

주요국 관세·원산지 동향

관세정책, 통상집행, 공급망·환경규제 등 주요 이슈를
원산지·공급망 리스크 관점에서 선별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미국 동향은 직전 발간호 이후 신규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국 동향은 최근 발생한 이슈를 중심으로 반영합니다.

2026
제5·6호



미국 동향



무역확장법 제232조 일부 품목 관세 한시 조정 (6.1.)

- 부속서 1-C를 신설하여 이동식 산업기계 등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화된 관세율 적용



무역법 제301조 관세 조사 및 판결

-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 한국에 12.5% 적용
제안 (6.2.)
- 연방대법원, 중국산 제301조 관세 적법성 인정한
항소심 판결 유지 (6.15.)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서명 (6.3.)

- 현행 관세 집행 체계 보완
- 수입신고인(IOR) 요건, 신고·관세심사·제재 절차 강화



관세회피 단속 동향

-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리한 추정' 적용으로 반덤핑관세
회피 인정 사례



베트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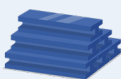
관세위반 제재 체계 개편

- 기존 관세 분야 행정위반 제재체계를 개편
- 수출물품 가공·생산시설 및 보관장소 변경 미통지
등 통지·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



고위험 물품 대상 이력추적 체계 추진

- 고위험 제품의 원산지·제조정보 및 공급망 이력정보
기록 의무화
- 정부 추적플랫폼 또는 자체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연계체계 구축



불법환적 및 원산지 위조 단속 강화

- 18개 위험품목군을 대상으로 원산지 서류 및
표시정보의 일치 여부 집중 점검
- 기업의 생산시설·생산능력 확인 등 실질적 원산지
검증 강화

·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최근 관세·원산지·공급망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이번 동향의 대상국으로 선정함

미국 관세·원산지 동향 최신 주요 뉴스



미국과 멕시코가 USMCA 공동검토와 관련한 1차 양자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자동차 원산지 규정, 철강·알루미늄, 경제안보를 주요 의제로 논의함

Reuters (5.29.)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및 권리 보호·집행 방식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함

연합뉴스 (5.30.)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25% 추가관세 부과 추진함

연합뉴스 (6.2.)



미 법무부가 IEEPA 관세 환급 대상을 소송 참여 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입장을 보이면서, 환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됨

AP (6.10.)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를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향후 추가 협상 가능성을 높임

연합뉴스 (6.11.)



독일이 의료보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추진 중인 혁신 의약품 지출 감축 정책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착수함

Reuters (6.19.)



① 철강·알루미늄·구리 일부 품목 관세 한시 조정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철강,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체계 추가 조정」(포고령 제 11032호)에 서명하였으며, 해당 포고령은 6월 4일 연방관보에 게재됨
- 미국 정부는 농업·산업장비 등이 미국 내 생산활동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의 적용 대상과 관세율을 일부 조정함
- 이번 개정은 포고령 제11021호(2026.4.2.서명)의 부속서 3에 농업용 장비 등 일부 품목을 추가하여 완화된 관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부속서 1-C를 신설하여 이동식 산업기계 등에 대해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원산지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함
- 한국산 물품 중 부속서 1-C 대상 품목은 기존 25%의 추가관세 대신, 기본관세와 제232조 추가관세를 합한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되어 관세 부담이 완화됨

구분	기존 관세율 (포고령 제11021호)	변경 관세율 (포고령 제11032호)
농업용 장비(콤바인·수확기 등), 주거용 공조설비(HVAC) ¹	25%	15%
이동식 산업기계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²	25%	25% 15%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회원국 등 무역협약국
알루미늄 인쇄판, 철제 락 ³	-	25%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사용 제품	10% 단, 미국산 95% 이상 사용	10% 단, 미국산 85% 이상 사용

출처: 연방관보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부속서 1-C 관세 조정 대상 품목(HTSUS)

8427.10.40	8427.10.80	8427.20.40	8427.20.80	8427.90.00	8429.11.00	8429.19.00
8429.20.00	8429.30.00	8429.40.00	8429.51.10	8429.51.50	8429.52.10	8429.52.50
8429.59.10	8429.59.50	8431.20.00	8431.42.00	8431.49.90	8701.10.01	8701.30.50
8701.91.50	8701.92.50	8701.93.50	8701.94.50	8701.95.50	8705.10.00	8705.20.00

1 포고령 제11021호에서 발표한 부속서 3에 추가하여 완화된 관세 체계를 적용함

2 포고령 제11032호에 부속서 1-C를 신설하여 미국의 건설·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물품의 관세 부담을 경감함

3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부속서 1-B에 추가하여 제232조 관세 대상에 편입함

② 무역법 제301조 관세 조사 및 판결

▶ 미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조사결과 발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12일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고, 6월 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함
- USTR은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제301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그 결과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가 없는 46개국⁴에는 12.5%, 나머지 14개국에는 수입금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10%의 관세율을 제안함
- 다만 부록 A에 나열된 제품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대상 품목,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총속 품목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
- 면제조항에 따라 새로운 제301조 관세가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와 누적 적용되지 않지만 USTR은 다른 관세에 대해서는 유사한 면제나 중복적용 방지를 제안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301조 관세와 현재 진행 중인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조사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제301조 관세와도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USTR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현황과 결과

조사 대상	한국 포함 60개 무역상대국		
조사 내용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도입 및 집행 여부		
진행 경과	3.12. 조사 개시 6.2. 조사 결과 및 조치 제안 발표 7.6. 서면 의견 제출 마감 7.7. 공청회 개최 예정		
조사 결과	구분	무역상대국	제안 관세율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도입국 (효과적 집행 미흡)	캐나다, 에콰도르, 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미국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약정 체결국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10%
	부분적 제도 운영국	영국	
	수입금지 제도 미도입·미집행국	한국 등 그 외 모든 국가	12.5%

주 1)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총속 캐나다·멕시코산 물품 등 적용 예외
주 2)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는 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여 중복 기재됨

출처: 연방관보 및 USTR 보도자료(6.2.)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4 알제리, 앙골라, 호주, 바하마, 바레인,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가이아나,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한국, 스리랑카, 스위스,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5 한국을 포함하여 16개 무역상대국(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을 대상으로 3월 11일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

▶ 미 연방대법원, 중국산 제301조 관세 적법성 인정한 하급심 판결 유지

-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15일 HMTX Industries 사건(사건번호 25-1012)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중국산 List 3·4A 품목에 대한 제301조 추가관세의 적법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유지됨
- 법원이 USTR의 관세수정·확대권한과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를 인정하면서 기존 제301조 추가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3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발표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일 「세관 집행 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행정명령 제14411호에 서명하였으며, 동 행정명령은 6월 10일 연방관보에 게재됨
- 미국 정부는 통관제도의 비효율, 불충분한 집행수단이 법령 회피를 초래하여 국가안보와 국내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세집행 강화를 추진함
- 이 행정명령은 저가신고, 수입신고인(IOR, Importer of Record)의 정보 은폐, 관세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인 관리요건과 신고·관세심사·제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DHS)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수입신고인(IOR)의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강화, 관세회피 및 공급망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제출 요건 확대,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
- 이에 따라 향후 수입신고인에 대한 관리와 공급망 관련 정보요구가 확대되고, 원산지·관세·강제노동 등 수입규제 분야에 대한 CBP의 집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세관집행 강화 행정명령 제14411호 주요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수입신고인 실체 검증 강화	미국 IOR의 미국 내 실체성 및 식별정보 확인요건 강화 검토, 외국 수입신고인의 약식통관(informal entry) 금지, 수입적격(Good Standing) 기준 마련 추진 (국토안보부 장관은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IOR 자격 관련 규정·지침·정책 마련)
공급망 정보 확보 확대	공급망 관련 생산자·공급자, 제품 식별번호 및 주요 사양 등 수입품의 공급망 및 생산 관련 정보 제출 범위 확대 (국토안보부 장관은 90일 이내에 외국 수출자가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 해당 외국 세관당국에 제출한 수출관련 자료의 제출 요건 마련 방안 검토)
통관위반 및 관세회피 단속 강화	강제노동 관련 생산품 수입, 품목분류 오류, 저가신고, 불법 환적 관련 수입 건, 「집행 및 보호법」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집행 우선순위 강화 (국토안보부 장관은 90일 이내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기준 강화조치 추진)
위반기업 제재체계 강화	법령 위반 수입품의 자진포기·압류·폐기·제3자 처분 절차를 신속화하고 고위험 화물 보증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 (국토안보부 장관은 90일 이내 관련 조치 마련)

출처: 연방관보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4 CBP,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리한 추정 적용으로 반덤핑관세 회피 판정⁶

사건 개요

조사대상: 중국산 견인식 잔디관리기류(TBLG)

사건번호: EAPA 사건번호 8201

결정일자: 2026년 5월 28일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조사대상	11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견인식 잔디관리기류(TBLG)
조사배경	일부 수입서류 및 CBP Form-28 답변에서 중국산 잔디청소기, 표면통기 등 HTS 8479.89.9599로 분류되고 일반 수입(type 01)으로 신고되어 반덤핑관세 현금예치금이 납부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됨
조사과정	CBP는 CBP Form-28 답변 및 수입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당 물품이 반덤핑관세 명령 대상 품목일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수입업체 및 중국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출요청서(RFI)를 발송함
주요 확인사항	다수 수입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제출자료만으로는 물품의 특성, 생산자, 생산과정 및 거래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또한 신고단가는 개당 3.52~12.25달러로 기록상 확인된 비교가격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남
CBP 판단	수입업체 및 공급업체의 자료제출 미협조를 이유로 19 U.S.C. §1517(c)(3) 및 19 C.F.R. §165.6에 따른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적용하여 해당 물품이 중국산 TBLG에 해당하며 반덤핑관세 명령을 회피한 것으로 최종 판정함
조치결과	조사대상 수입신고의 정산을 정지 또는 유지하고, 관련 신고를 반덤핑관세 적용대상(Type 03)으로 정정하도록 하였으며, 중국 전역 반덤핑관세율 386.28%를 적용함
시사점	CBP는 자료제출 미협조에 대해 불리한 추정을 적극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자 및 공급업체의 공급망 입증자료 확보와 조사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6 미국 CBP 공고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부록 1

2026년 미국의 관세부와 현황표

작성일: 2026.06.15.



2026년 미국의 관세부와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기존 적용 관세 ²⁾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	무역법 제122조 전면 관세 ⁴⁾	관세부과율		통상법 제301조 ³⁾	기본관세 자유무역협정(FTA)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¹⁾	한국·유럽연합(EU)·일본		15%		15%	품목별 관세 +	25~100% (전기차)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or
	중국		25%		25%				
	캐나다·멕시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총측	① 완성차 조건 : 상무부 승인 대상 : 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① 완성차 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USMCA 미총측	25%		25%				
철강·알루미늄·구리 중심 (부속서 1-A)	중국		50%		50%	품목별 관세 +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or
	영국		25%		25%				
	그 외 국가		50%		50%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중심 (부속서 1-B)	중국		25%		25%	품목별 관세 +	25%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or
	영국		15%		15%				
	그 외 국가		25%		25%				
고정식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 (부속서 3) ⁵⁾	중국		15%		15%	품목별 관세 +	7.5% or 25%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or
	러시아·벨라루스·쿠바·북한		25%		25%				
	그 외 국가		15%		15%				
이동식 산업기계·농기계 등 일부 제품 (부속서 1-C) ⁶⁾	한국·EU·일본 등 무역협약국		15%		15%	품목별 관세 +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or
	중국		25%		25%				
반도체 및 파생상품 ⁷⁾	한국·EU·일본		25%		25%	품목별 관세 +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or
	캐나다·멕시코	중국							
		USMCA 총측							
		USMCA 미총측							
그 외 제품 ⁸⁾	한국·EU·일본			10%	10%	전면 관세 +	7.5%~100%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or
	중국								
	캐나다·멕시코	USMCA 총측			0%				
		USMCA 미총측		10%	10%				

- 1) 한국은 EU·일본과 동일한 15%로 합의(기본세율 포함,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버스 및 기타 차량 (제8702호: 운전자 포함 10명 이상 수송할 수 있는 차량, 미국 주석 38(c) 열거 품목)에는 10%가 적용되고, 중대형차량(제8701·8704·8705·8706·8709호, 미국주석 38(b) 열거 품목)에는 25%가 적용됨
- 2) 반덤핑·상계관세와 기본관세/FTA는 중복부과가 되지 않음. 단, 제301조와 기본관세/FTA 및 제301조와 반덤핑·상계관세는 중복 부과 가능
- 3)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와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25%), 광물자원(25%), 영구자석(25%), 반도체(50%), 태양전지(50%), 전기차(100%) 등
- 4) 제122조 임시 수입 관세는 기본 세율(MFN) 또는 FTA 세율에 추가되어 부과됨
- 5) 포고령 제11021호(2026.4.2. 서명; 2026.6.1. 제11032호에서 적용 대상 품목 일부 추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단, 러시아산 알루미늄 200% 관세는 계속 적용됨
- 6) 포고령 제11032호.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7) 2026년 1월 15일부터 적용. 제8471.50호·제8471.80호·제8473.30호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반도체에만 적용됨
- 8) 의약품의 경우 포고령 제11020호 부속서 3의 회사에는 7월 31일 이후, 그 외는 9월 29일 이후 100%, 한국은 협정에 따라 15%가 적용될 예정임
목재 및 파생상품의 경우 한국·EU·일본은 10% 또는 15%, 그 외는 10% 또는 25%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25.10.14.~	2027.01.01.~	비고
연목	10%	10%	무역협정 원료국가 영국: 10% 한국·EU·일본: 15% (한국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적용)
가구	목재가구	25%	
	주방 캐비닛, 세면대	25%	

부록 2

2026년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 타임라인

작성일: 2026.06.15.

날짜	내용	출처
1.14.	1월 15일부터 부속서에 명시된 기술요건 충족하는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25% 관세 부과 -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서의 사용·연구개발 등 제외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 조정 백악관
1.29.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절차 마련	쿠바 정부의 대미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백악관
2.6.	이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승인	이란 정부의 대미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백악관
2.6.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이행 등을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25% 추가 관세 철폐	러시아 연방 정부의 대미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관세 조정 백악관
2.6.	미국은 인도산 수입품에 18% 상호관세를 적용, 인도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관세 인하 등 잠정 합의	미국-인도 공동 성명 백악관
2.9.	미국은 방글라데시산 제품에 19% 상호관세를 적용, 방글라데시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시장접근 확대 등 합의	미국-방글라데시 상호 무역 협정에 대한 공동성명 백악관
2.12.	미국은 북마케도니아산 상품에 15% 상호관세를 유지, 북마케도니아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관세 철폐 등 합의	미국-북마케도니아 간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의 틀에 관한 공동 성명 백악관
2.19.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 상호관세를 유지,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합의	미국-인도네시아 무역 협정 최종 확정 백악관
2.20.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마약관세 등이 위임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결	Learning Resources, Inc., et al. v.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t al. (No. 24-1287) 미국 연방대법원
2.20.	대법원 판결에 따라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발령	특정 관세 조치 종료 백악관
2.20.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한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백악관
2.20.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중단 조치 지속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 면세(de minimis) 적용 중단 지속 백악관
3.4.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미정산 및 미확정 정산 건에 대해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정산·재정산하도록 명령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3.5.	미국 24개 주는 무역법 제122조의 국제수지 적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임시 수입 추가세의 무효 확인 및 집행 금지를 청구	State of Oregon et al. v. Trump et al. (No. 26-01472) 미국 국제무역법원
3.6.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즉시 이행 불가 진술을 근거로 IEEPA 관세 환급 명령의 즉시 이행 부분을 유예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3.11.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설비 관련 조치·정책·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	제301조 조사 개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 관련 특정 경제권의 조치·정책·관행 연방관보
3.12.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60개 경제권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부과 및 집행 관련 조치·정책·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	제301조 조사 개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권의 조치·정책·관행 연방관보
3.12.	CBP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해 개발 중인 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의 개발 진척도를 항목별 40~80% 수준으로 보고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4.2.	-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원료에 100% 관세 적용 발표, 한국은 한-미 합의에 따라 15% 적용 예정 - 국내생산 이전 승인 기업, 제네릭 의약품 등 감면·예외 가능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 백악관
4.2.	4월 6일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금속 함량 비율이 아닌 수입품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50%, 25%, 15% 차등 관세율 적용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강철, 구리 수입 조정 조치 강화 백악관
4.6.	IEEPA 관세 환급 대표 사건인 Atmus Filtration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취하에 따라 소송 종료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4.13.	CBP는 4월 20일 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을 배포하고, 수입업자·통관대리인의 환급 신청 시 관세 차액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	CSMS #68340863 -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CAPE 기능 배포 안내 관세국경보호청
5.6.	USTR은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제301조 관세 조치에 대한 두 번째 4년 주기 검토를 개시	제2차 4년 주기 검토 개시: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법·정책·관행 미국 무역대표부
5.6.	CBP는 제232조 알루미늄·철강·구리 관세 관련 무관세 코드 신설 등 기술적 수정 사항을 공지	CSMS #68554727 - 알루미늄, 철강 및 구리 수입에 대한 제232조 관세 기술적 수정 안내 관세국경보호청
5.27.	CBP는 대만산 자동차부품, 목재제품 및 민간항공기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정과 관련해 통관 신고 지침을 공지	CSMS #68762890 - 미-대만 무역안보협정 관련 관세 조정사항 이행 지침 관세국경보호청
6.1.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동식 산업장비·농기계 등 일부 제품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임시 감면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철강,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체계 추가 조정 백악관
6.3.	수입신고인(IOR) 자격·보증·식별정보 요건 강화, 공급망·제품정보 제출의무 및 우선 단속 대상 정비	세관 집행 강화 백악관
6.3.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도입·집행 미흡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 또는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단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도입 및 효과적 집행 실패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
6.15.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중국산 List 3·4A 품목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확대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유지	HMTX INdustries, LLC v. United States (No. 25-1012) 미국 연방대법원